

「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 검토서

※ 담당자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 정진호(02-2180-3036)

법 률 안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		○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, 이는 일반법인「개인정보 보호법」개정으로 달성 가능하므로 동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. ○ 또한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근거 확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